

제 호		
긴급차단 명령서		
온라인서비스 제공자	법인명(대표자명)	
긴급차단 대상의 위치정보(URL)	※ 대상이 다수일 경우 뒤쪽에 적습니다.	
명령 사유	적발일시	※ 대상이 다수일 경우 뒤쪽에 적습니다.
	위반행위 내용	※ 대상이 다수일 경우 뒤쪽에 적습니다.
「저작권법」 제133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의7제1항에 따라 긴급차단을 명령합니다.		
년 월 일		
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직인		
※ 담당자 정보		
① 성명: ② 소속:		
③ 전화번호: ④ 전자우편주소:		
⑤ 주소:		
비고		
1.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「저작권법」 제142조제2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.		
2. 해당 긴급차단은 임시적인 조치로,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「저작권법」 제133조의4제3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긴급차단 해제를 명령할 수 있으며,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「저작권법」 제133조의4제6항에 따라 접속차단 조치로 확정되거나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긴급차단 조치 해제로 확정됩니다.		

연번	긴급차단 대상의 위치정보(URL)	명령 사유	
		적발일시	위반행위 내용
1			
2			
3			
4			
5			
6			
7			
8			
9			
10			
11			
12			
13			
14			
15			